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
민간위탁동의안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2018. 12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9일

-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, 선정 사업의 관리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.
- 충청북도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(2019. 3. ~ 2022. 3. 예정)
- 위 치 : 충청북도 내
- 공간규모 : 센터운영 가능면적(센터장 1, 직원 3명)
- 위 탁 비 : 2.5억원 정도(2019년, 인건비 1.6, 운영비 등 0.9)
- 수탁기관 : 도시재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- 위탁사무
 -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
 - 사업 선정 및 관리(모니터링 등) 지원
 -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
 - 전문가 육성(도시재생대학 운영) 및 파견
 -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, 지원
 - 도시재생 홍보 및 소식지 발간
 - 시·군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, 미설치 시·군의 기반강화 지원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호식)

- 이 동의안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및 「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에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도시재생(urban regeneration)은 인구 감소, 산업구조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, 새로운 기능 도입·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·사회적·물리적·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임(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호)

- 과거 개발이익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이 부각됐으며,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주민참여와 행정기관, 민간, 시민단체,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함.
-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조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민, 기업, 시민단체, 전문가, 행정 등 도시재생사업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, 지역리더 발굴·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조직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설치를 하였음.
-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방식으로는 행정직영(충주, 제천) 방식과 민간위탁운영(청주)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. 행정직영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지만,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민간위탁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운영을 맡음으로서 면서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확보나 사업추진 효율성이 낮은 것이 단점임.
-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노후 주거지역 환경정비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주요 내용임.¹⁾
-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용이한 민간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중 건축문화과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환경개선사업 외에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이나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와의 연계 등 센터의 운영에 대한

1)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발표한 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”

설명이 필요함. 또한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 역할에 대해서도
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의안번호	제 107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12월 일 (제369회)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1월 26일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1월 2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가.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, 선정사업의 관리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.

※ (근거법령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,

「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나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(2019. 3. ~ 2022. 3. 예정)

나. 위치 : 충청북도 내

다. 공간규모 : 센터운영 가능면적(센터장 1, 직원 3명)

라. 위탁비 : 2.5억원 정도(2019년, 인건비 1.6, 운영비 등 0.9)

마. 수탁기관 : 도시재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바. 위탁사무

-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
- 사업 선정 및 관리(모니터링 등) 지원
-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
- 전문가 육성(도시재생대학 운영) 및 파견
-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, 지원
- 도시재생 홍보 및 소식지 발간
- 시·군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, 미설치 시·군의 기반강화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계획 : 붙임1

나. 관계법령 : 붙임2

<붙임1>

함께하는 3민
일류경제 충북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



충청북도
건축문화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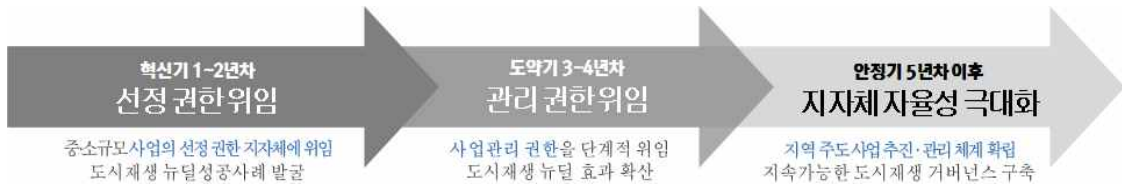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 및 관리하는데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

I 필요성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매년 선정*하고, 업무 권한(공모선정, 사업관리, 사후관리 등)이 점차 위임됨에 따라 광역도의 업무역량 확충

* 기존 재생사업 3개소(국비 432억원), '17년 뉴딜 선정 4개소(국비 400억원), '18년 뉴딜 선정 4개소(국비 330억원), '19~'22년 선정 예상 20개소(국비 1,700억원)



- 도시재생 전문가 등에 대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(소규모 재생사업 등 주민참여사업)
- 시·군 도시재생센터의 전문화와 미설치 시·군의 지원

- ※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, 조직확충 요구('18. 3. / '18. 9. 국토부)
 - 광역센터 설치여부에 따라 광역시·도 배정물량 차등배정 입장
 - 11개 시·도 설치 완료(4개 도 포함), 4개 시·도 설치 예정

총계	설치			미설치			비고
	소계	광역시	광역시도	소계	광역시	광역시도	
17	11	7	4 (경기 강원 경남 제주)	6	1	5	울산 충남 전북 경북 설치 검토중

⇒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신규사업의 발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**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필요**

II

지원센터 구성(안)

- 설치근거 : 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 제11조,
‘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제4조

○ 센터의 주요기능

-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
- 사업 선정 및 관리(모니터링 등) 지원
-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
- 전문가 육성(도시재생대학 운영) 및 파견
-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, 지원
- 도시재생 홍보 및 소식지 발간
- 시·군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, 미설치 시·군의 기반강화 지원
(3개 시 설치, 8개 군 미설치)

○ 운영방법 검토

운영방법		장 점	단 점
행정직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 안정성에 따른 지속성 확보 • 예산확보의 안정성 • 의사결정의 신속성·효율성 • 정책의 효과적, 효율적 집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부족 • 단기간의 성과 도출에 따른 실질적 도시재생 불가 • 도시재생 혁신성 부족
민간위탁	공기관 (연구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가능 • 인력 및 조직 등 독립적 운용 가능 • 공공기관 등 대내외 네트워크 확보 • 민관의 갈등해소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료화될 가능성 존재 • 예산집행의 유연성 부족 • 행정기관의 하위조직으로 인식
	민간 (대학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용이 • 통합적이며 유연한 예산집행 •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 제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분 및 직업적 안정성 부족 •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성 부족 • 전문가 능력검증 곤란 및 집행력 부족
재단설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분 및 직업적 안정성 • 다양한 의견수렴용이 • 주민역량강화 등 업무추진 효율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혁신성 부족, 관료화될 가능성 존재 • 예산집행의 유연성 부족 • 사업추진 집행력 부족

※ 11개 시·도 광역센터 설치(민간위탁 9, 재단 2)

⇒ 기관의 전문 연구위원 활용 및 센터의 자율성, 독립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위탁(공기관, 민간) 운영이 타당

III 세부 운영계획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**협약일로부터 3년간**(2019. 3. ~ 2022. 3.)
 - ※ **협약종료 전**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, **향후 운영방안 별도 검토**
- 수탁대상 : 도내 연구기관, 대학, 법인 중 **공모 선정**

◆ (근거규정)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- 민간위탁 :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, 기관, 개인에 맡겨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
- 수탁기관 선정 : 공개모집 원칙,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 - * 인력·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·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·공신력,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선정 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
- 위 탁 비 : '19년도 250백만원
 - 인건비 158, 집기류 및 운영경비 52, 사업비 40
- 조직구성 : 센터장 1명, 팀장 1명, 팀원 2명
- 추진절차

민간위탁 의회 동의	'19년 당초 예산확보	수탁기관 공모	선정심의 위원회 구성	수탁기관 심의·선정	협약체결 및 공증
·건축문화과 →도의회	▷ ·도비 250백만원	▷ ·공개모집 (도홈페이지) ·신청서 사업 계획서 제출	▷ ·위원 6~9명 (위원장: 기획관리실장) ·민간전문가 포함	▷ ·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·출석위원 과반수 찬성	▷ ·선정결과 발표 (도홈페이지) ·위수탁협약서 체결
'18 11월~12월	'18 11월~12월	'19. 1월	'19. 2월	'19. 2월	'19. 3월

□ 관련 법령

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】

제11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4.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】

제14조(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·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, 시·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·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전략계획수립권자,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, 인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)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
2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

【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
 2. 시·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
 3. 시·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, 컨설팅 등의 지원
 4.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
 5.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지원
 6. 도시재생 관련 홍보
 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,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】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외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】

제2조(동의안의 제출) ① 충청북도지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.

제3조(수탁기관 선정절차)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탁사무 해당부서(이하 “소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구성·운영한다.

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6조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·업무주관실·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·과·소장이 된다.

제8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